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7.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96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3. 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

나. 상정의결

-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1. 27.)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이호현)

가. 제안이유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 면제로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추어 주민자치프로그램 사용료 감면 비율을 대폭 확대해 다자녀 가정에게 프로그램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선정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기준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단, 1인에 한함)에 대해 사용료 면제(안 제10조제5항)
- 초저출생 시대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사용료 감면을 확대
(안 제10조제5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선정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기준 마련(안 제17조제3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애인 복지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7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2023. 9.27. ~ 2023.10.17.)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주민자치과가 제출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대관료 및 수강료 관련 제10조(사용료 등)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된 제17조(구성 등)가 되겠음.
- 현행 제10조(사용료 등)를 개정하려는 것은 첫째, 중증 장애인을 위해 중증 장애인 동행자 1명과 저출생 사회 다둥이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에게 시설 사용료를 100% 면제하여 주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 현행 공익목적 행사는 제5항제1호에 가목으로 신설해 100% 사용료 감면은 현행을 유지하고 제1호의 나목과 다목에 각각 중증 장애인 동행자와 다둥이 가족 100% 감면 규정을 반영한 것인데, 이와 관련된 “별표 1”을 보면, 이 규정이 다소 혼동을 주게 됨.

- 현행 제10조 관련 “별표 1”은 사용료와 수강료로 나누어져 있고, 사용료 징수 대상 시설은 대강당, 기타시설(소회의실), 체육시설(헬스장)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 따라 중증 장애인과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족이 단체 행사목적 이용 시설인 대강당과 기타시설을 개인용 목적으로 이용할 때도 100% 감면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용료 이외에 수강료는 어떻게 되는지가 불명확함.
-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의 설명과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나목 내용 중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단, 1인에 한함)” 중 “대리”를 반영한 이유, 동행자가 중증 장애인을 대신하여 대리로 수강하는 것을 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 둘째, 제2호 중 아목은 등록된 장애인에게 50% 수강료 감면을 규정한 것이고, 자목은 두 자녀 이상 다둥이 가족에 대한 50% 수강료 감면 규정을 반영한 것임. 이로 인해 10% 감면 규정 관련 제4호 중 가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다중 강좌 감면 방지를 위해 제6항은 수강료 30% ~ 50% 감면 대상자들의 “감면은 한 명당 최대 두 개의 강좌에 한정한다.”로 문구를 다소 명확히 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 장애인과 다자녀 가족을 위한 사용료와 수강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정검토가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개정안	수정검토(예시)
1. 사용료 100퍼센트 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나. 개정안 내용 참고 다. 개정안 내용 참고	1. 사용료 등 100퍼센트: 공익목적 행사의 시설 사용료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수강료 * 개정안 나목과 다목을 각각 가목과 나목으로 수정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